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4

오프라인 전시 참가 규정 및 계약 조건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시회"라 함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G-STAR; Game Show & Trade All Round 2024)"를 의미한다.
 - ② "참가사"라 함은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현장접수 계약금 또는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 참가사 계약이 성립된 개인, 법인을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사)한국게임산업협회"를 말한다.
 - ④ "참가신청"이라 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시 참가 신청을 말한다.
 - ⑤ "방역지침"이라 함은 방역관리체계에 관한 지침으로 전시장, 참관객 관리 등 주최자와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및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요청하는 모든 필요 조치를 말한다.

제2조(계약 및 납입조건)

전시회 참가신청사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주최자가 지정한 계좌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일체를 기한 내 납부함으로써 참가사 계약이 성립된다.

- ① 현장 접수 참가사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참가비의 10%를 계약금으로, 90%는 조기신청 접수 시작 전일까지 남은 90%의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참가사는 참가비, 수수료, 세금 포함 인보이스에 명기된참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② 조기신청 및 일반신청 참가사는 인보이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참가비, 수수료, 세금 포함 인보이스에 명기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③ 납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참가비 납입 기한 도래 이전에 사유, 납부예정일, 납부확약 내용을 필히 기재하여 공식문서로 주최자에게 통고할 경우 취소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한 연장은 인보이스 별최대 20일로 1회만 가능하며, 납입일 연장 공문을 접수한 이후 취소 시 전체 인보이스 금액의 5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 ④ 제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이 남았더라도 조기신청 접수 기간 접수된 부스 위치 추점 대상인 참가사(대형 부스 등)는 부스 위치 배정일 전까지, 부스 위치 임의 배정 대상인 참가사(BTC 40부스 미만, BTB 20부스 미만)는 전시회 개최 7일 전까지 참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⑤ 기한 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참가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조(참가신청)

- ① 참가 신청서는 먼저 제출한 순으로 접수된다. 접수 기간 별, 신청 및 배정 가능한 부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접수가 마감된다.
- ② 2024년 지스타 전시 부스 참가는 현장 접수의 경우 독립부스로만, 조기신청 및 일반 신청의 경우 조립부스와 독립부스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③ 참가 신청기간 중 BTC 및 BTB의 신청 가능 부스 규모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현장접수의 경우 BTC 참가사는 50부스 또는 100부스로만 신청 가능하며, BTB 참가사는 10부스, 20부

스 또는 30부스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 2. 조기신청, 일반신청 기간 독립부스는 최소 2부스 이상 신청해야 한다.
- 3. 조기신청, 일반신청 기간 제2전시장 BTC의 경우 최소 20부스 이상 신청해야 한다.
- 4. 조기신청, 일반신청 기간 30부스 이상 신청 시 10부스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 ④ BTC는 최대 100부스, BTB는 최대 30부스까지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신청 가능하다. 부스 추가 희망 시, 사전에 희망 규모를 제출해야 하며 주최자는 승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안내한다. 현장 참가 접수 수와 규모 등을 검토하여 주최자가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참가사가 희망하는 부스 추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접수 기간 별 마감 이후, 잔존 부스는 주최자가 제2항, 제3항, 제4항과 제4조와 관계없이 부스 판매 및 부스 위치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⑥ 부스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부스 타입 (독립, 조립, 폐쇄형)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경을 희망할 시, 참가 취소 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재신청 시, 신청하는 일자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다.

제4조(부스 위치 배정)

주최자는 접수 기간 별 마감 이후, 전시장 공간조화(부스규모), 관람효율 및 안전,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부스 규모 별 배정 가능 구역을 확정하고 참가사의 부스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현장 접수 참가사는 부스 '위치 선택 옵션' 선택 시, 부스 위치는 주최자가 미리 획정한 구역 중 참가사가 1,2순위 희망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위치 선택 옵션'을 선택한 현장 접수 참가사가 선택한 1순위 희망 위치가 다른 참가사의 1순위 희망 위치와 중복하지 않을 경우, 즉시 확정된다. 만약 중복될 경우 우선 권한 순서에 따라 결정 한다.
 - 1. 모든 부스가 신청 가능한 위치에서 중복이 발생할 경우, 더 큰 부스의 참가사가 먼저 결정 한다.
 - 2. (동일 규모 부스) 메인스폰서를 신청한 참가사가 가장 먼저 위치를 결정 한다.
 - 3. (동일 규모 부스) 최근 6년간(18년~23년) 참가 횟수 및 규모, 스폰서십 참가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산점이 부여하고 가산점이 높은 참가사 먼저 위치를 결정 한다.
- ③ '위치 선택 옵션'을 선택한 현장 접수 참가사는 1순위 희망 위치가 선정될 경우 20%의 할인이 적용되며 '위치 선택 옵션'을 선택하였더라도 1순위 희망 위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30%의 할인이 적용된다.
- ④ 현장 접수 위치 결정 후 "부스 규모 축소", "메인스폰서 신청 취소", "추가 희망 부스 규모 취소 또는 축소" 등과 같이 참가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참가사의 부스 위치는 주최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1순위 희망 위치 미선정에 따른 할인은 제공되지 않는다.
- ⑤ 조기신청 기간 내, BTC 40부스 이상, BTB 20부스 이상 신청 기업의 부스 위치 선정은 현장 접수 부스 위치 결정 완료 후 진행된다.
- ⑥ 조기신청 기간 내, 신청한 참가사 중 BTC 40부스 이상, BTB 20부스 이상 참가사의 부스 위치는 주최자가 확정한 구역 중 동일 부스 규모 간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위한 부스 규모 별 구역 확정 도면은 조기신청 마감 후 제공된다.
- ⑦ 부스 위치 추첨에 대한 규정은 BTC 40부스 이상, BTB 20부스 이상 참가사와 주최사 간의 협의 및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 ⑧ 전시 참가사 중 BTC 40부스 미만, BTB 20부스 미만 신청 참가사와 일반신청 기간에 접수한 참가사의 부스 위치는 주최자가 임의로 배정한다.
- ⑨ 주최자는 부스 위치가 결정된 이후라도 각호의 경우가 확인될 경우 참가사의 동의 없이 전시장 및 부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1. 참가 접수 시, 확인된 전시 참가 목적 아닌 <순수 상품 판매> 등 사전 고지된 전시장 외 별도 구역 에 구성되어야 할 부스일 경우
 - 2. 콘텐츠 이용등급 및 장르의 특수성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전시규정 적용이 필요한 부스일 경우
 - 3. 주최자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강화의 목적으로 전시장 통합 또는 축소 운영을 결정할 경우

제5조(설치 및 철거)

- ① 참가사는 지정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설치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설치 또는 반출을 지연할 경우와 폐기물 처리 등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참가사는 지정된 전시 운영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시 종료 이전 전시품 및 장치물을 사전에 반출하고 부스 운영을 중단할 경우, 향후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부스 운영 및 전시장 관리)

- ① 참가사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방역전담을 포함한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② 참가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및 다른 참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및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주최측에 청구할 수 없다.
- ③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화재 등 위기상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통로공간에서 전시 활동을 금지한다.
- ④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전시 신청한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인수 합병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주최자 승인 후 양도가 가능하다.
- ⑤ 참가사는 전시장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에게 손해 보상·배상하여야 한다.
- ⑥ 음향장비의 사용은 타 참가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주최사는 참가사의 과도한 음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⑦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 ⑧ 기타 전시물품으로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물품의 철거를 요청하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 ⑨ 부스 내에서 선착순으로 판촉물(한정판 피규어, CD, 포스터, 굿즈 등)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선착순 이벤트 진행 시, 주최자는 해당 이벤트를 취소할 수 있다.
- ⑩ 참관객의 동선방해와 안전위협 등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용 차량, 피켓, 윈드배 너 등 설치 및 사용)는 금지한다.

제7조(저작권 보호 및 콜라보레이션 관련한 규정)

- ① 참가사의 자체 부스 외 전시장 내 콘텐츠, 공연, 이벤트 등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촬영, 녹화, 녹음은 금지한다.
- ②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권 혹은 거래 기밀권 등의 위반 및 침해와 관련, 가해 참가사는 가해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피고용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닌다. 특히 참가사가 부스 내에서 음악 및 영상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발생 시, 참가사가 모든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참가사 부스 내 비참가사 전시(노출)
 - 1. 지스타 전시 품목에 해당하는 콘텐츠, 서비스, 기술, 제품 등에 대해서는 참가사 부스 내 비참가사의 전시가 가능하다.
 - 2. 비참가사의 전시 공간은 참가사 전체 부스의 바닥면적과 부피 기준 50% 이하로 한다.
 - 3. 비참가사의 전시 공간은 참가사와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되게 조정할 수 없다.
 - 4. 비참가사 CI/BI는 참가사 CI/BI 대비 30% 이하 사이즈(대각선 길이 기준)로 부스 내부의 구조물에 설치해야한다.

제8조(신청 및 계약취소)

- ① 참가사 또는 참가신청사가 참가 취소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통고해야 하며 서면이 주최자 사무실에 도착한 날짜에 접수되고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② 현장 접수 신청을 한 참가사 중 취소를 신청한 자는 각호에 따라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최 자가 청구한 손해보상·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참가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거 나 공제한다.
 - 1. 2024년 2월 29일(목) 이전까지 취소 할 경우, 손해배상·배상금 없음
 - 2. 2024년 2월 29일(목) 이후 취소 할 경우, 계약금 10%를 손해배상·배상금으로 주최사에게 지급함.
 - 3. 2024년 4월 3일(수) 이후 취소 할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된 총 참가비의 100%를 손해보상·배상금으로 주최사에게 지급함.
- ③ 조기신청 및 일반신청을 한 참가사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각호에 따라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최자 가 청구한 손해보상•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참가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된 참가비에서 배상금을 공제 후 반환한다.
 - 1. 제2조 제2항(인보이스 발행 후 15일 이내)의 기간 중 취소될 경우, 손해보상·배상금 없음.
 - 2. 제2조 제3항(납입일 연장 기간) 및 제4항(부스 위치 배정)의 기간 중 취소될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된 총 참가비의 50%를 손해보상·배상금으로 주최사에게 지급함.
 - 3. 제2조 제3항(납입일 연장 기간) 및 제4항(부스 위치 배정)의 기간 후 취소될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된 총 참가비의 100%를 손해보상·배상금으로 주최사에게 지급함.
- ④ 주최자가 일방적으로 신청 취소 및 참가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한다.
 - 1.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 및 전시부스 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2. 부스 배정이 완료된 후 참가사가 참가 취소 또는 참가 규모 축소하는 경우.
- 3. 참가비를 제2조에서 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전시 콘텐츠나 상영물, 물품, 부스(형태, 규모)등 사전 전시 계획과 실제 전시가 지스타의 성격과 다르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역지침 이행 확약 공식서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① 주최자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에 대한 방역지침이나 명령에 따라 전시회 개최 기간 전 개최가 취소될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 ② 주최자가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는 경우
 - 2.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시규모, 참관객 인원 및 대상을 제한하는 등 축소 개최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참가사는 주최자에게 손해보상•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보안, 위험부담 및 보험)

- ① 주최자는 참가사와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경비와 방역지침 이행을 위한 매뉴얼과 전담 인력을 운용한다.
- ② 참가사는 전시회 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 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③ 참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의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참가사가 전적으로 보상과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사의 의무로 한다.
- ④ 참가사는 전시부스 및 전시부스 인근 통로에 방문한 참관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전시 부스를 운용해야 한다.

제11조(보충규정)

-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참가기업 매뉴얼 등)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전시회 전시장인 벡스코(BEXCO)의 제 규정도 보충규정으로 준용한다.
- ③ 보충규정은 참가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참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보충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과 보충규정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원상복구)

① 참가사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복구해야 한다.

②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참가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분쟁해결)

이 규정과 보충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사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위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G-STAR 2024) 오프라인 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